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85서식]

긴급응급조치 통지서(보호 대상자 교부용)

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응급조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1. 긴급응급조치 내용

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
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• 긴급응급조치의 보호 대상: []상대방 []상대방의 동거인 []상대방의 가족

접근금지 장소: *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접근금지한 경우 기재*

2. 긴급응급조치의 기간

< 긴급응급조치 관련 안내 사항 >

□ 위와 같이 긴급응급조치 하였으니 스토킹행위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12에 신고하시면 출동하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**위반 예시**

-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관련

 ▸ 귀하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경우
 ▸ 귀하의 주거, 직장,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경우

-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관련

 ▸ 귀하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
 ▸ 귀하가 주거, 직장,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
 ▸ 귀하가 사용하는 이메일에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 등을 발송한 경우

- 위 예시 이외에도 행위자가 귀하에게 접근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위반행위가 있다고 적발된 경우

□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,

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사법경찰관 (인)

〈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 〉

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

○ **<대상>** 스토킹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·신고자 및 그 친족, 반복적으로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

○ **<내용>** 피해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신변보호 실시

○ **<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유형>**

① **(보호시설 연계 및 임시숙소 제공)** 주거지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소 제공

② **(신변경호)** 위험발생이 명백·중대한 경우 △ 근접·밀착경호 △ 경찰관서 출석·귀가 시 동행 등 신변경호 수준과 기간을 정하여 실시

④ **(주거지 순찰 강화)** 피해자 주거지 및 주변에 대한 맞춤형 순찰 실시

⑤ **(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)** 112신고통합시스템에 스토킹·데이트폭력 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의 연락처(가족 포함 최대 3개) 등록, 긴급신고체계 구축 및 신속 출동

⑥ **(위치추적장치 대여)** 위험방지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치추적장치(스마트워치)를 피해자에게 대여, 부착된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신고 연결

⑦ **(CCTV 설치)** 위급 시 피해자가 주거지 CCTV 화면 및 비상음을 송출, 경찰 긴급출동

⑧ **(신원정보 변경)** 피해자의 이름, 전화번호, 차량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을 적극 지원

지원 제도 및 기관

① **여성긴급전화** 1366센터(☎1366)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및 각 지역의 쉼터·정부기관·병원·법률기관으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**한국여성의전화**(02-2263-6465, 6464)를 통해 의료·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상담시간 : 평일 오전 10시～오후 5시(점심시간 오후 1시～2시)

③ **다누리 콜센터**(☎1577-1366)를 통해 이주여성은 24시간 통역 및 상담 지원, 쉼터 입소 및 의료·법률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④ **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**(☎02-3476-6515)을 통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담당 경찰관

(현장출동) 소속: ○○해양경찰서 ○○파출소 ○팀 성명: 경○ 홍길동
(사건담당) 소속: ○○해양경찰서 ○○과 ○○계 성명: 경○ 홍길동 (☎ 032－000－0000)
※ 자세한 문의는 해양경찰서 담당 경찰관(☎ 032－000－0000) 또는 형사과(☎ 032－000－0000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이런 경우는 신고해 주세요

★ **피해 유형의 예시**

▸ 스토킹행위자(이하 '스토커')가 주거지나 회사 등 내가 있는 위치와 장소 인근에 나타난 경우

▸ 스토커가 이메일, 휴대전화, 집이나 회사의 전화기로 연락을 해온 경우

▸ 내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 스토커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경우 등